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자체 무상 귀속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4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자체 무상 귀속	2
※ 참고자료: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운용 주요 법률	6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2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간에 소유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비용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자체 무상 귀속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귀속)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현행법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현행법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주체(개발자)와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의무를 적용받는 택지개발자 중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곳은 의무 대상 239곳 중 5곳(전체의 2%)으로 시설 소유권은 소유권 인수·인계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개발지구	폐기물 발생량 (톤/일)	폐기물처리시설	소유권 이관 방식	시설 소유권
1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30	(통합) 은평뉴타운	인계인수서 (기관장)	은평구
2	경기	성남시	판교택지 개발지구	57	(통합) 판교환경 에너지시설	인계인수서 (기관장)	성남시
3		남양주시	남양주시 별내지구	52	(통합) 남양주 별내 클린센터	인계인수서 (기관장)	남양주시
4		파주시	운정 1,2지구	130	(통합) 운정환경 관리센터	인계인수서 (기관장)	파주시
5		김포시	김포한강 신도시	80	(통합) 자원화센터	인계인수서 (기관장)	김포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²⁾을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수하는 주체도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 법 체계상 자연스러운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³⁾, 「공공주택 특별법」⁴⁾ 등에 따라 공공시설⁵⁾이 무상으로 관리청 등에 귀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역시 법률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이 상당하며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을 명확히 하여 추후 규정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 개발의 어느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

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5곳을 제외한 나머지 234곳(98%)은 시설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

3) 「국토계획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5)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溝渠: 도랑),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명하므로⁶⁾,

개정안의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을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⁷⁾.

[개정안 부칙 제2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정 의견
부 칙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을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부터 적용한다.

6) 현행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때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공정 실시부터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7)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도입하면서, 수정의견 내용과 동일한 범위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가 있음.

* 부칙 제2조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설치·운영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상 귀속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운용 주요 법률

법률	소관부처	법률제정	조문	조문제정
국토계획법	국토부	2003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971
주택법	국토부	1973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979
택지개발촉진법	국토부	1981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981
한국수자원공사법	기후부	1988	제32조(공공시설등의 귀속)	1988
산업입지 및 개발법	국토부	1990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990
항만법	해수부	1967	제15조(항만시설의귀속 등)	1991
한국가스공사법	산업부	1982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1991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	산업부	1993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199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법	국토부	1996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996
전원개발촉진법	산업부	1979	제14조(공공시설의 귀속등)	1997
도시개발법	국토부	2000	제66조(공공시설등의 귀속)	2000
접경지역지원법	행안부	2000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200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기후부	2000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200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행안부	2001	제17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00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부	2003	제97조(정비지역내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003
공공주택특별법	국토부	2004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특별법	산업부	2003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00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부	2005	제24조(공공시설의 귀속)	20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국토부	2005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5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	국방부	2005	제3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5
도시공원 및 녹지법	국토부	1980	제3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5
철도건설법	국토부	2004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2005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법	행안부	2006	제30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법	국토부	2007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문체부	2007	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2007
스마트도시 조성지원법	국토부	2008	제1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8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국토부	2008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2008
재해위험 개선사업 특별법	행안부	2008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부	2008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08
마리나항만의 조성법	해수부	2009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200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부	1999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009
새만금사업 추진특별법	국토부	2013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1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법	농식품부	2014	제4조 (정비지역내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2014
도로법	국토부	1962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2014
지역개발 및 지원법	국토부	2015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2015